

의안번호	제732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안

발의자	김국기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4년 10월 2일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안

(김국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2
----------	-----

발의연월일 : 2024년 10월 2일

발의자 : 김국기, 최정훈, 안지윤,
박재주,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황영호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고, 도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북학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충북학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 충북학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충북학연구소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충북학진흥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 나. 관련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자긍심 및 애郷심을 고취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충북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북학”이란 선사 이래 시대를 거쳐 내려온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의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정체성과 주체성 확립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북학의 연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충북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활동 지원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충북학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북학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충북학 관련 정책
2.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충북학 관련 연구자료 활용 및 확산
4. 그 밖에 충북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충북학진흥사업) 도지사는 충북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북학 정립을 위한 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사업
2. 충북학 연구인력 양성 사업
3. 충북학 관련 포럼, 심포지엄 등의 사업
4.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 밖에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충북학연구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북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관내에 둔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충북학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연구소의 운영 및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북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충북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
2. 충북학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충북학 관련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충북학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충북학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소 담당자가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8165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고, 도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북학 연구소 운영 및 각종 사업 지원

3. 관련조문

- 제7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연구소의 운영 및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7조(경비지원)에 의거 충북학연구소 진흥에 대한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860,000천원

- 연 사업당 최대 76,000천원 소요 예상
- 연 충북학연구소 운영비 최대 96,000천원 소요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172,000	172,000	172,000	172,000	172,000	860,000
(안 5조) 충북학 진흥사업 추진		76,000	76,000	76,000	76,000	76,000	380,000
(안 6조) 충북학연구소 설치·운영		96,000	96,000	96,000	96,000	96,000	480,000
재원 조달		172,000	172,000	172,000	172,000	172,000	86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172,000	172,000	172,000	172,000	172,000	860,0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자담 등)		-	-	-	-	-	-